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6월 20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장규권 의원
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6월 20일)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휠체어 경사로 규정 미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함에 따라 장애인·노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2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3) 경사로 설치 지원, 종류 및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4) 경사로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.

- 5) 경사로 설치 및 정산, 비용의 반환을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.
- 6) 협력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○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 등의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) 주요 내용

- 가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) 경사로 설치 지원, 종류 및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라) 경사로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.
- 마) 경사로 설치 및 정산, 비용의 반환을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
- 바) 협력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).

3) 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에게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나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」가 운용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와 지원 신청, 지원 사항 등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같은 부서에서 조례 운용에 따른 실효성이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